##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특별전형 특별감사 결과

## 1. 감사 개요

· 감사기간 : 2019. 1. 16.(수) ~ 1. 21.(월) [5일간]

• 감사인원 : 3명

## 2. 감사 결과 지적사항

	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(안)
1.	종목별 모집인원 결정 절차 부적정	<ul> <li>19학년도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종목별 모집 인원을 결정하여 입학처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선발위원회 심의 없이 통보</li> <li>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, 연세대학교 학칙 제3조,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 규정 제2조, 제3조】</li> </ul>	
2.	평가위원 추천 절차 부적정	○ 19학년도 체육특기자 평가위원(서류·면접 각 9명)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체육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없이 입학처에 통보 【고등교육법 제34조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, 제34조, 연세대학교 체육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】	
3.	평가위원 구성 부적정	<ul> <li>2019학년도 체육특기자 면접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내부 규정과 달리 서류평가 위원 중 1인만면접평가 위원으로 선정</li> <li>【고등교육법 제34조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,제34조,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규정 제5조】</li> </ul>	
4.	학생 선발 부적정	<평가과정 부적정> ○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평가위원 3인(◇◇◇), ○○○, △△△)은 평가 요소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하여 평가	ㅇ 경고(2)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(안)
	<ul> <li>교수 ○○○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지원자 총 126명에 대해 동영상 평가를 포함하여 70 여분 만에 부실하게 평가</li> </ul>	
	<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>	모집요강에 포지션별
	<ul><li>○○○○은 별도 협의절차 없이 자체 결정하여 평가위원을 추천</li></ul>	선발인원을 구체화하고 평가지표에 정량평가 요소를 확대하기 바람
	<ul> <li></li></ul>	<별도조치>
	<ul> <li>○○○은 1차 평가를 완료하고, 평가 마지막날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1분동안 빙구 지원자 31 명 중 6명의 점수만 수정</li> </ul>	○통보(경징계) ○수사의뢰
	<ul> <li>△△△는 국가대표 활동 여부, 대회실적 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9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만점을 부여</li> </ul>	
	<ul> <li>이 과정에서 제보내용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저조한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아 합격한 정황 확인</li> </ul>	
	【고등교육법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31조, 제34조,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심사 규정 제6조】	